

## 충청북도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### 1. 발의자 : 장선배 의원

### 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- 발의일자 : 2011년 2월 25일
- 회부일자 : 2011년 3월 3일

### 3. 제안이유

- 지방자치단체 각종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‘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’ 와 ‘의료급여심의위원회’ 기능을 담당하던 생활보장위원회를 폐지하여 ‘사회복지위원회’에서 운영토록 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내실을 기하는 한편,
-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알기 쉬운 용어와 간결한 문장으로 조문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,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하려는 것임. 현행 조례 중 상위법령과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을 일괄로 개정 추진하고자 함.

### 4. 주요내용

- 사회복지위원회의 기능 추가(안 제2조)
  - 사회복지위원회의 기능에 자활기금 운용 및 의료급여심의 기능 추가
- 위원회 구성 인원 확대 및 위원 자격 추가(안 제3조)
  - 15명 이상 20명 이하에서 15명 이상 30명 이하로 확대
  - 위원 자격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대표자 추가
- 위원의 해촉 사유 추가(안 제5조)
  - 법인·단체의 대표자가 자격을 상실하거나 사임한 경우 또는 법인·단체의 해산 등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

- 위원회 참석 수당 지급 조문 신설(안 제10조)
  - 「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」에 따른 수당과 여비 지급
- 다른 조례의 개정(부칙 안 제2조, 제3조)
  - 도 자활기금 및 의료급여기금과 관련한 심의위원회를 각각 도 사회복지위원회에 통합 운영으로 관련 조례 개정
-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

## 5. 검토의견

### 가. 개정 동기

- 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와 의료급여 심의위원회를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운영토록 함으로써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개정하려는 것임

### 나. 위원수 확대운영(20명 이하 → 30명 이하)

- 이 조례안이 지난 2005년 8월 제정된 이후 복지분야 수요를 비롯한 각종 복지단체 등이 증가함에 따라 각종 단체의 전문가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대표자를 추가함으로써 내실있는 위원회 운영을 기하려는 것으로 사료됨.

### 다. 위원회 통합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

- 현행 적용조례
  - 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→ 「충청북도자활기금 조례」 적용
  -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→ 「충청북도 의료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」의 적용을 받음
- 위원회 운영 대행
  - 자활기금운용 및 의료급여심의 위원회는 「충청북도 생활보장위

원회'에서 운영을 대행하고 있음

- 대행 운영 중인 생활보장위원회 위원의 임기

- 현행, 생활보장위원회 위원은 12명 구성에 임기는 2년으로 오는 3월 25일로 임기가 만료 됨.
- 따라서, 이 조례가 시행되는 시점에는 위원의 잔여임기와는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.

#### 라. 종합의견

- 이 개정조례안은 그 동안 충청북도가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 (2010년말 현재 93개위원회) 중 회의를 개최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운영 되는 등 유사성 있는 위원회의 통·폐합을 도의회에서 끊임 없이 제기되어 왔던 사항을 의원발의 하면서, 일부 조문의 불부합한 내용을 현실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